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-2464호(2025.11.6.)로 열람공고한 강남구 청담동 82-7번지 도시계획시설(도로) 입체적 결정(안)에 대하여 2026년 제2회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(2026.2.26.) 심의결과(조건부의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강 남 구 청 장

1. 결정 취지

- 이면도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보행로를 조성하고, 향후 해당 보행로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‘입체적 도시계획시설(보행자전용도로)’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신설	소로	3	-	1.5m	특수 도로	131.6m	청담동 82-7	청담동 82-7	보행자 전용도로	-	-	입체적 결정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도로:보행자전용도로)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 후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도로	보행자 전용도로	청담동 82-7 일대	길이	-	증)131.6m	131.6m	-	199.4m ² (구분지상권 실면적)
				폭	-	증)1.5m	1.5m		
				높이	-	증)해발고도40.0~55.0m	해발고도40.0~55.0m		
				면적	-	증)199.4m ²	199.4m ²		

※ 공간적 범위는 지표면 기준 지하 1m, 지상 5m로 설정하고, 사용범위는 보안등 설치, 보도포장 등 보행자 안전 및 보도의 유지보수 목적 외에 지하의 굴착 및 지상의 타 시설 설치를 금함

※ 존속기간: 지상권설정 등기일로부터 건축물 존속할 때까지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-	보행자 전용도로	•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- 길이 : 131.6m - 폭 : 1.5m - 높이 : 40.0~55.0m (해발고도 기준) - 수평투영면적 : 199.4㎡	• 보행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 상 보행자,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도모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

3. 관계도면: [붙임]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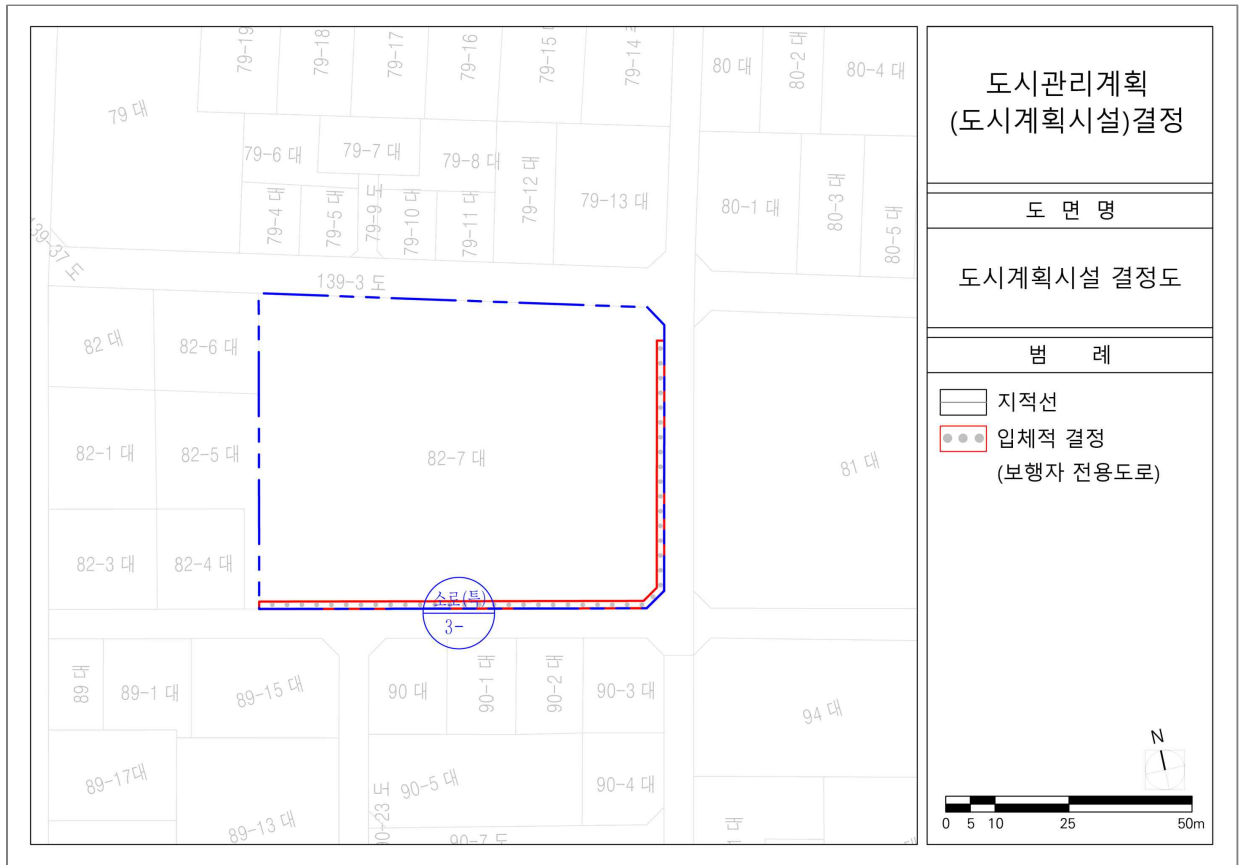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4. 열람장소: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0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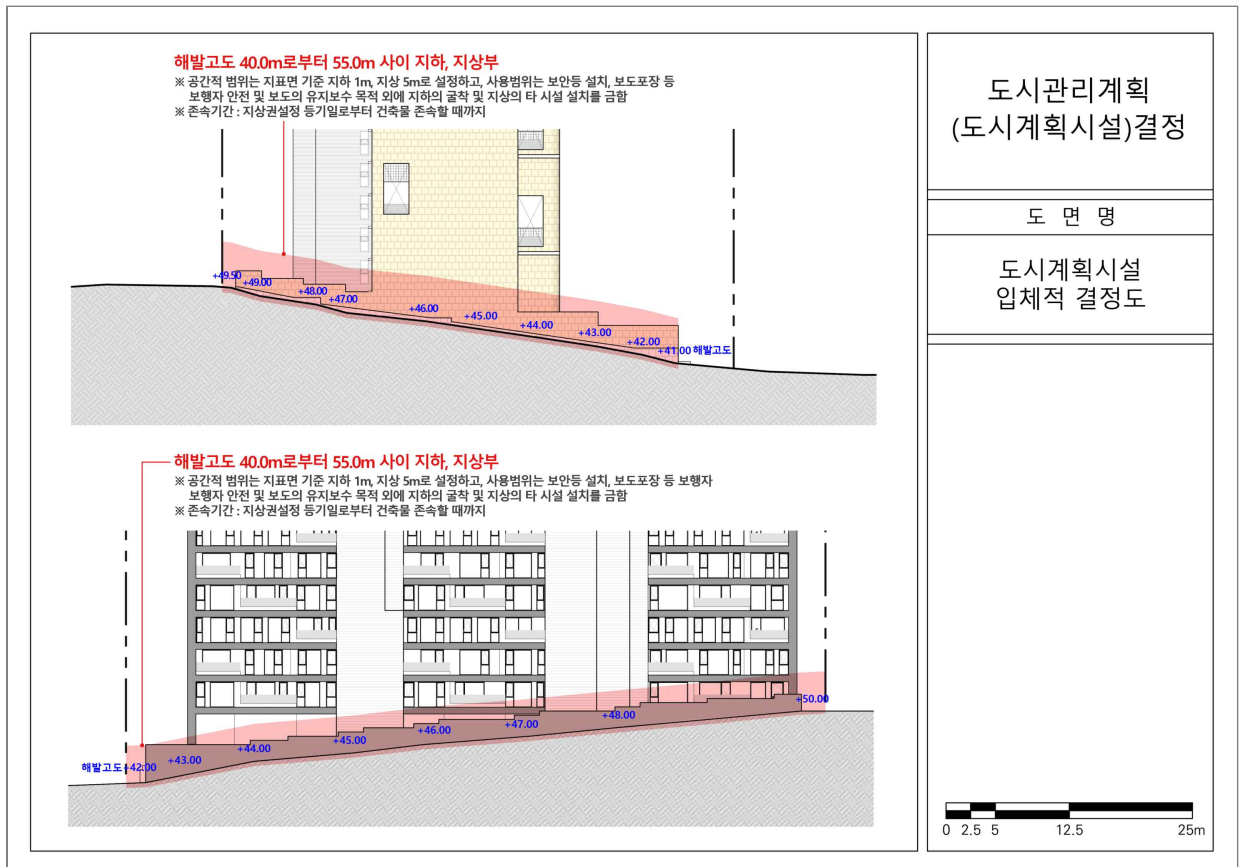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:관계도면]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도



도시계획시설(도로:보행자전용도로) 입체적 결정도





도시관리계획
(도시계획시설)결정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
및 지형도면 고시도

[범례]

- 지적선
- 도시계획시설
- 도시계획시설 결정

SCALE = 1:1,000

0 5 10 30m

